# (건축-007) 항타기 와이어로프 파단사고

공사명	○○ 식품 통합생산기지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7년 9월 1일(금) 16:10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충청북도 진천군	사고 종류	파열(파단)	
구조물 손실	-	인적피해	사망 1명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 ),	해당없음( 〇 )

## 가. 사고개요

#### 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공장

○ 규모 : 햇반동(B1~6F), 조리육동(B1~3F), 사무/복지동(B1~3F), 유틸리티동 (B1~3F), 폐기물 처리장, 위험물처리동, 주경비동, 부경비동 외

• 연면적 : 113,872m²

○ 공사기간 : 2017.8~2019.1

#### 2) 사고경위

○ 기초공사를 위해 파일을 삽입한 후 항타작업을 위해 파일 두부를 정리하던 중 와이어 로프가 파단되어 해머가 낙하하면서 파일 두부를 정리하던 작업자 1명을 타격하여 사망

#### 3) 사고원인

○ 반복되는 파일 항타작업으로 인해 와이어 로프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도르레 주변에서의 와이어 로프가 파단된 것으로 추정

### 나. 재발방지대책

- 주기적인 와이어로프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 손상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부위가 있다면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-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가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 해서는 안된다.
-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전 정도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사용해야 한다.
-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·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-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·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·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